

수화통역 기초과정에 관한 협약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에 소재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288번지에 소재한 대구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5-2호 센츄리 II 오피스텔 B104호에 소재한 한국농아인협회는 상호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수화통역 기초과정』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협약한다.

2000년 3월 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 구 대 학 교

한국농아인협회

총장 이경교

총장

윤덕홍

회장

양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라 한다), 대구대학교(이하 “대구대”라 한다),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이라 한다)는 『수화통역 기초과정』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협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방송대, 대구대, 한농협이 공동으로 『수화통역 기초과정』을 개설·운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협약하는 데 있다.

제2조(신의와 성실) 방송대, 대구대, 한농협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이 공동사업임을 인식하여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호 협조한다.

제3조(명칭) 본 과정의 명칭은 『수화통역 기초과정』으로 한다. 다만, 방송대, 대구대, 한농협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교육임을 명시하되, 추후 명칭의 변경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4조(교육내용, 방법 및 기간)

- ① 『수화통역 기초과정』의 교육내용은 수화통역사 준비에 필요한 기초적인 이론과 실습으로 한다.
- ② 『수화통역 기초과정』의 교육방법과 교육기간은 방송대, 대구대, 한농협 삼자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5조(협약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본 협약사항에 대해 만료일 30일전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전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개설 및 운영

제6조(개설) 본 과정 개설일의 확정 혹은 변경은 방송대, 대구대, 한농협 삼자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7조(업무분담 및 상호협조)

① 방송대, 대구대, 한농협은 본 과정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1. 방송대는 본 과정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TV 방송, 교육생 모집, 원격영상강의 및 출석강의, 교육생 평가 및 학사관리를 담당한다.
2. 대구대는 본 과정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및 교재개발, 교육생 모집, TV 교육프로그램 제작, 원격영상강의 및 출석강의 등을 지원한다.
3. 한농협은 본 과정을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및 교재개발, 교육생 모집, 교재 및 TV 교육프로그램 제작, 원격영상강의 및 출석강의 강사 등을 지원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방송대, 대구대, 한농협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호 협조한다.

1. 방송편성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방송대 TV 프로그램 기본편성 방향에 따른다.
2. 방송대는 대구대와 한농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육생에 관한 자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적평가서 등)를 제공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 ① 대구대와 한농협이 제작에 참여한 교재 및 비디오테이프는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대구대와 한농협은 신뢰성과 질적 우수성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대구대와 한농협이 제작에 참여한 방송강의용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는 방송대가 지적 소유권과 방송송출권을 가진다.

제9조(수강료 등) 방송강의에 대하여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는 매회 삼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과정의 교육생에게 공급되는 교재 및 비디오테이프 판매가격은 각각 방송대에서 결정한다.

제10조(교육생의 신분과 수료증)

- ① 이 협약에 의거 등록된 교육생은 방송대 평생교육과정 및 한농협 수화교육과정의 수강생의 신분을 갖게 된다.
- ② 본 과정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방송대 총장과 한농협 회장 공동명의의 수료증

을 수여한다.

제11조(기타사항) 기타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이하 여백 -----